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범위 구체화 및
정부 예산 지원 근거 신설〉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01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제220140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범위 구체화 및 정부 예산 지원근거 신설 (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7항)	3
※ 참고자료	11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01호)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5.

다.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월차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범위 구체화 및 정부 예산 지원근거 신설 (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7항)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현행법 제39조의3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들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각 호로 정하는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1항제2호에서는 철도운영자등이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시행령¹⁾ 제30조제2항에서는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총 20,699대의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 현행법 상 의무적인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 】**

구분 (시행령 제30조 제1항)	세부내용	법 규정 시기	CCTV 카메라 현황(대)			
			계	설치 완료	설치 중	비율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1.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	2016. 11.19.	3,180	3,180	-	100%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2020. 12.22.	13,958	13,426	532	96%
제2호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	2019. 11.26.	20,699	20,699	-	100%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1. 「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2.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교환하거나 탈선·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3.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2019. 11.26.	1,419	1,419	-	100%
제4호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1. 변전소 (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 (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널선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2019. 11.26.	6,741	6,741	-	100%

※ 자료 : (설치완료 현황) 한국철도공사 (2024.8월 기준), (설치 중) 공단·공사 진행사업

개정안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까지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영상기록장치를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 구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안전사고</u>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②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승강장 및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2조제7호에 따른 <u>이동편의시설</u>-----<u>안전사고나 범죄발생</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나.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범위 구체화 검토

2023년 기준, 열차 내가 아닌 역사 등에서 발생한 철도 범죄는 총 1,624건인데 이는 전체 철도범죄 2,726건 중 59.5%에 달하며, 최근 5개년도 수치로 볼 경우 62.7%임.

【최근 5년간 지상사건 장소별 철도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전체 발생	지상 (a+b)	역구내(a)							기타** (b)
			맞이방	승강장	매장	화장실	E/L	E/S	계단	
계	12,410	7,784	2,546	2,015	528	510	73	790	304	1,018
2019	2,459	1,655	562	301	100	88	11	159	82	352
2020	2,198	1,413	505	331	107	81	11	153	39	186
2021	2,136	1,254	442	370	97	88	6	113	36	102
2022	2,891	1,838	550	493	109	196	23	159	92	216
2023	2,726	1,624	487	520	115	57	22	206	55	162

* 지상사건: 열차 내가 아닌 열차 외 장소인 역사 등 지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 선로, 광장 등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장, 대합실, 승강설비에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현재 역사 내에 총 20,699대의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역사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현황】

설치구역	승강장	대합실	승강설비	합계
설치개수(개)	6,707	7,983	6,009	20,699

* 맞이방, 통로, 계단 등을 포함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안전사고 뿐 아니라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현행법 상의 승강장 등에 더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관련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구체적으로,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이용하는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과 같은 여객시설 뿐만 아니라 보행접근로, 입구, 장애인용 주차구역과 같은 매개시설,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등이 모두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포함됨²⁾.

그런데 이동편의시설중에서도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설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을 통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참조.

다.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비용지원 검토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도시철도법」 제4조³⁾에 따라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 「철도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철도나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게 됨.

이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이 철도안전 확보 측면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정부의 비용지원 규정의 경우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최근 4년간 국가철도공단은 CCTV 개량사업비로 총 763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일반철도,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에 대하여만 집행된 것임.

3)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최근 4년간 철도분야 CCTV 개량사업비 현황】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개량사업비	76,326	20,497	17,637	24,621	13,571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

※ 자료: 국가철도공단 (2024.8.13.)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076호)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운영사가 예측하여 추산한 물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50% 보조를 가정하는 경우 재정 소요는 연평균 약 124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항 신설)
 - 교통약자, 사회적약자 관련 철도시설 등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II. 비용추계 결과(일부 추계)

- 추가재정소요: 향후 5년 간 총 621억원(연평균 124억원)
 - 국비: 향후 5년 간 총 560억원(연평균 112억원)
 - 지방비: 향후 5년 간 총 61억원(연평균 12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항 신설)	621	-	-	-	-	621	124
국가	560	-	-	-	-	560	112
지방자치단체	61					61	12

주 1.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각 철도운영사 제출자료)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2. 재정부담은 국가 소유(전액 부담), 지방자치단체 소유 철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5 부담), 민간사업자의 경우(국가 5: 민간사업자 5)로 가정함

관련 부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국가철도 외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도시철도까지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 심사 시 정부의 비용지원을 통한 철도안전의 제고 효과, 비용소요의 정도, 도시철도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자료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 가능시	출입구 통로
버 스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버스	○	○	○	○		○		○	○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철도		○	○	○			○		○	○	○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접근로	주 입구	장애인 용 주차 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 레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	○	○	○	○	○	○	○	○	○	○
도시철도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 시설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개 찰 구	승 강 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 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버스정류장	○	○									○	
철도 역사	○	○	○	○	○	○	○	○				○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광역철도 역사	○	○	○	○	○	○	○	○				○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